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운항기술기준, 운영기준, 운항·정비규정의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행위에 대한 중요도(중요사항 또는 경미사항)를 재분류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경각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 개선과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형태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87조, 제113조)

전자적인 형태로 자격증명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에게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도 기존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자격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

나. 항공신체검사 제도 보완(안 제92조, 제93조 및 제95조)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조건부로 발급하거나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의학회의 자문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된 것을 협회에서 사후 확인 시 해당 증명 보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하는 절차 신설

다.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마련 근거 신설(안 제129조)

단속공무원이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시 지켜야 하는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라. 항공기가 조류 등에 충돌한 경우 보고하는 의무보고 방법 개선(안 제134조)
항공기가 동물 또는 조류와 충돌한 경우에는 항공기 손상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 서식에 따라 보고 하도록 보완

마.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의 감경·가중 상한 범위를 확대(처분일수의 1/2 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개선(안 제279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승인을 변경하고자 경우에 필요한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 마련 등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보완

사.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10)

반복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두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처분과 특혜발생 가능성이 없도록 보완

아.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 12)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에 대한 시설 확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주로·계류장·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 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 이착륙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준 보완

자.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확대(안 별표 12)

현행 비행기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전기·계기 분야의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전기·계기 분야의 표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기준 마련

차.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34)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함

카. 운항기술기준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 개선(안 별표 35)

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하고,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행위의 중요도를 재분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9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영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3조제4항 중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4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거나 별표 9의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신체검

사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이를”을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과”로, “지방항공청장에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반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5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은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의 소견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술
2. 정기적 의약품 복용
3. 일상적 검사에서의 이상소견으로 인한 정밀검사
4. 비정상 심장리듬
5.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상태 경험

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체상태 저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업무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회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간 동안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제8호 중 “자격증명서”를 “자격증명서(국내의 경우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 측정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4조제2항 본문 중 “2분의 1”을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단서 중 “제48호가목부터”를 “제49호가목부터”로 한다.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적합 여부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에 그 변경의 내용 및 사유”를 “이내에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83조 중 “검사는”을 “검사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7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합 여부와”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2) 표 중 “단독 비행시간(또는 기장시간)”을 “단독 비행시간”으로, “회전익항공기”를 “헬리콥터”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호 다목4)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 · 계류장 · 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2호가목2) 중 “150시간 이상”을 “150시간 이상(자가용 조종사과정 교육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호 다목4)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 · 계류장 · 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

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3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호 다목4)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 · 계류장 · 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4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를 (3)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 · 계류장 · 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5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를 (3)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 · 계류장 · 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6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 ·

계류장·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 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7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계류장·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 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8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표 제9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나목1)가)(3)를 삭제하고, 같은 가)(4)를 (3)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기비행훈련을 실시하는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은 활주로·계류장·항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 비행훈련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2,410시간(항공전자·전기·계기과정은 1,72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비행기 과정			헬리콥터 과정			항공전자·전기·계기 과정		
		학과 시간	실기 시간	계	학과 시간	실기 시간	계	학과 시간	실기 시간	계
항공법규	국제항공법(ICAO와 IATA에 관한 내용 포함)	45	-	45	45	-	45	45	-	45
	국내항공법(사고조사 및 항공보안 포함)									
	항공정비관리(정비관련 규정, 도서, 정비조직, 정비프로그램, 정비방식 및 양식기록에 관한 내용 포함)	45	-	45	45	-	45	45	-	45
	중간시험(2회 이상)	5	-	5	5	-	5	5	-	5
	소계	95	-	95	95	-	95	95	-	95
정비일반	수학·물리	30	-	30	30	-	30	30	-	30
	항공역학	45	-	45	45	-	45	45	-	45
	항공기 도면	20	25	45	20	25	45	20	25	45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10	20	30	10	20	30	10	20	30
	항공기 재료, 공정, 하드웨어	20	25	45	20	25	45	20	25	45
	항공기 세척 및 부식 방지	15	15	30	15	15	30	15	15	30
	유체 라인 및 피팅	10	35	45	10	35	45	10	35	45
	일반공구와 측정공구	10	20	30	10	20	30	10	20	30
	안전 및 지상취급과 서비스작업	20	10	30	20	10	30	20	10	30
	검사원리 및 기법	30	15	45	30	15	45	30	15	45
	인적수행능력(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	45	-	45	45	-	45	45	-	45
	중간시험(2회 이상)	10	-	10	10	-	10	10	-	10
	소계	265	165	430	265	165	430	265	165	430
항공기체	항공기 구조	30	30	60	30	30	60	-	-	-
	항공기 천, 외피, 목재와 구조물 수리	20	10	30	20	10	30	-	-	-
	항공기 금속구조 수리	30	60	90	30	60	90	-	-	-
	항공기 용접	20	40	60	20	40	60	-	-	-
	첨단 복합 소재	25	50	75	25	50	75	-	-	-
	항공기 도색 및 마무리	10	20	30	10	20	30	-	-	-
	항공기 유압계통	30	30	60	30	30	60	-	-	-
	항공기 착륙장치 계통	30	30	60	30	30	60	-	-	-
	항공기 연료계통	30	30	60	30	30	60	-	-	-
	화재방지, 제빙(De-icing)·방빙(Anti-icing) 및 빗물 제어	15	15	30	15	15	30	-	-	-

	(Rain Control)									
	객실공조 및 공기압력 제어계통	20	25	45	20	25	45	-	-	-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	20	25	45	-	-	-	-	-	-
	헬리콥터 조종 계통	-	-	-	20	25	45	-	-	-
	중간시험(2회 이상)	15	-	15	15	-	15	-	-	-
	소계	295	365	660	295	365	660	-	-	-
항공발동기	왕복엔진일반 및 흡기·배기계통	20	25	45	20	25	45	-	-	-
	왕복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45	20	25	45	-	-	-
	왕복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45	20	25	45	-	-	-
	왕복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45	20	25	45	-	-	-
	프로펠러	20	25	45	20	25	45	-	-	-
	헬리콥터 엔진	20	25	45	-	-	-	-	-	-
	헬리콥터 동력전달장치	-	-	-	20	25	45	-	-	-
	왕복엔진 장착, 탈착 및 교환	20	25	45	20	25	45	-	-	-
	왕복엔진 정비 및 작동(화재방지계통 포함)	20	25	45	20	25	45	-	-	-
	경량항공기 엔진	10	5	15	10	5	15	-	-	-
	가스터빈엔진 일반 및 구조	20	25	45	20	25	45	-	-	-
	가스터빈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45	20	25	45	-	-	-
	가스터빈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45	20	25	45	-	-	-
	가스터빈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45	20	25	45	-	-	-
	가스터빈엔진 장착, 탈착 및 교환	20	25	45	20	25	45	-	-	-
	가스터빈엔진 정비 및 작동(화재방지계통 포함)	10	20	30	10	20	30	-	-	-
	중간시험(2회 이상)	5	5	10	5	5	10	-	-	-
	소계	285	355	640	285	355	640	-	-	-
전자·전기·계기(기본)	기초전기·전자	120	75	195	120	75	195	120	75	195
	항공기 전기계통	60	30	90	60	30	90	60	30	90
	항공기 계기계통	60	30	90	60	30	90	60	30	90
	항공기 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치	120	60	180	120	60	180	120	60	180
	중간시험(2회 이상)	5	10	15	5	10	15	5	10	15
	소계	365	205	570	365	205	570	365	205	570

전자·전기·계기 (심화)	전자·전기·계기	-	-	-	-	-	-	45	45	90
	디지털 전자	-	-	-	-	-	-	45	45	90
	RF통신	-	-	-	-	-	-	60	60	120
	항공통신계통	-	-	-	-	-	-	60	60	120
	항법계통	-	-	-	-	-	-	90	90	180
	중간시험(2회 이상)	-	-	-	-	-	-	5	10	15
	소계							305	310	615
최종 시험	종합평가 시험	5	10	15	5	10	15	5	10	15
계		1,310	1,100	2,410	1,310	1,100	2,410	1,035	690	1,725

※ 비고 : 해당 분야의 교육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비행기, 헬리콥터 및 항공전자·전기·계기 분야의 동일한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제9호다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비실기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비 및 공구	
	비행기과정 또는 헬리콥터 과정	항공전기·전자·계기 과정
1. 기초 금속 가공 실기	가. 장비 1) 동력 그라인더 2) 동력 드릴링머신 3) 바이스(Vise) 12개 이상 및 작업대 3대 이상 4) 형상 가공장비 5) 금속 절단용 동력 쇄톱 나. 측정 및 금 굿기 개인용 공구 1) 스틸자 2) 삼각자 3) 필러 게이지 세트 4) 디바이더(Divider) 세트 5)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내·외경 측정) 6) 마이크로미터(내·외경 측정) 다. 조립용 공구 1) 일반공구 세트 2) 사이드 커터 플라이어 3) 핸드 드릴과 소형 다이아 미터 드릴 세트 4) 해머 세트(볼핀, 동, 라바, 피혁, 플라스틱, 크로스형)	좌동
2.용접 실기	가. 산소-아세틸렌 용접장비 세트 나. 전기 아크 용접기 1대 다. 용접 보호장구(눈 및 얼굴 가리개,	좌동

	보안경, 가죽 장갑 및 앞치마) 라. 점 용접용 전기저항 용접기 1대	
3.판금 실기	가. 장비 1) 절단기 1대 2) 그라인더 1대 3) 판재 접기 장치(Cornice brake) 4) 핸드 바이스(Hand Vise) 1개 5) 형상 롤러(Forming Roll) 1대 6) 정밀드릴링머신(Sensitive Drilling Machine) 1대 7)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 나. 공구 1) 판금(Plate) 게이지 1개 2) 판금 공구 세트 3) 쇠톱 4) 줄 세트 5) 센터 및 핀 펀치 세트 6) 평면 정과 여러 단면의 정 세트 7) 복합소재 수리 공구	좌동
4. 발동기 실기	가. 장비 1) 왕복발동기 1대 이상 2) 가스-터빈 발동기 5대 이상 3) 시운전이 가능한 발동기 또는 작동 모습을 시현할 수 있는 발동기 1대 이상 4) 발동기 분해 시 부품 보관용 스탠드 5) 부품 세척용 장비 6) 이동용 호이스트(Hoist) 7) 발동기 슬링 8) 발동기 분해 및 조립용 공구 세트 9) 비파괴검사용 장비(초음파검사, 형광침투검사, 와전류검사, 자분 탐상검사) 10) 내시경검사 장비 나. 공구 1) 일반 공구 세트 2) 토크 렌치(Torque Wrench) 3) 스트랩 렌치(Strap Wrench)	좌동
5. 항공 기체 실기	가. 헬리콥터, 비행기를 포함한 항공기 3대(가동 할 수 있거나 정비가 가능할 것) 이상 나. 유압식 리프트 잭, 리프트 슬링	좌동

	등 작업대 다. 기술도서(圖書) 비치용 책상 및 진열대 라. 작업용 운반차 마. 소화장비(CO₂ 소화기 등) 바. 작업대, 초크 등 격납고용 비품 사. 이동용 소형 크레인 아. 타이어 수리용 장비 자. 오일 및 연료 보충용 장비 차. 케이블 스웨이징(Swaging) 장비 카. 이동용 유압식 실험 트롤리 (Trolley) 타. 일반 공구 세트 파. 로터 트랙킹 및 밸런싱 장비 (헬리콥터 과정에 한한다) 하. 트랜스미션 정비용 작업대 2대 (헬리콥터 과정에 한한다)	
6. 항공기 계통 실기	가. 유압계통 부품 나. 착륙장치계통 부품 다. 공압계통 부품 라. 비행조종장치 부품 마. 객실 공기조절장치 부품 바. 산소계통 부품 자. 제빙계통 부품 차. 비상장치, 방빙장치 등의 다양한 부품	좌동
7. 항공 전기·전자·계기 실기 (기본)	가. 특수공구 및 측정기기 1) 전기 납땜인두 12세트 이상 2) 전선 스트리퍼 1개 이상 3) 전기·전자·계기용 공구 1세트 이상 4) 크림핑(Crimping) 공구 1세트 이상 5) 멀티미터 1세트 이상 6)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1세트 이상 7) 메가 옴(Mega Ohm) 미터 1세트 이상 8) 배터리 충전장치 9) 직류(5 - 28 volt DC)·교류 전원 공급 장치 10) 전원공급장치	좌동

	11) 신호발생기(실기 교육용 포함) 12) 교류 전압계 13) 변압기 나. 소요자재 1) 실기교육용 항공기 케이블 2) 항공기 플러그, 리셉터클 (Receptacle) 등 3) 항공기 램프(직류 및 교류용) 다. 시험 또는 훈련장비 1) 압력계기 시험용 장비 2) 고도계기 시험용 장비 3) 공기누설 점검용 장비(모형장비를 포함한다) 4) 컴퍼스 교정 모의장치 5) 간단한 형태의 자동조종장치 6) 항공전자 작동 모의장치 라. 탑재장비 및 계기 1) 매니폴드 압력 게이지 2) 유압 게이지 3) 발동기 오일 압력 게이지 4) 속도계기 5) 피토(Pitot) 정압 헤드 6) 고도계 7) 상승계 8) 선회경사지시계 9) 방향 자이로스코프(Gyroscope) 10) 인공수평계 11) 발동기회전계기 12) 발동기온도계기 13) 발동기 배기가스 온도계기 14) 연료량계기 15) 송신기(Transmitter) 16) 초단파·고주파 송수신기 17) 계기착륙장치[착륙경로수신기, 마커(Marker)수신기]	
--	--	--

	18) 장거리 항법 장비(GPS, IRs) 19) 탑재항법장비 20) 무선고도계기 21) 항공기 마그네토(Magneto) 및 점화용 전선 22) 직류 발전기 또는 교류 발전기 23) 전압 조정기 및 전류제한 장치 24) 시동기(Starter Motor) 25) 정지형 인버터(Static Inverter)	
8. 항공 전기·전자·계기 실기 (심화)	-	1) 정속구동장치 또는 통합구동 발전기 2) 반파정류기(Half-Wave Rectifier), 전파정류기(Full Wave Rectifier) 또는 브리지정류기(Bridge Rectifier) 3) 전자식 디스플레이 유닛 4) 오디오 컨트롤 패널(Audio Control Panel-ACP) 5) 무선통신 패널 (Radio Comm-unication Panel-RCP) 6) 선형 변위 비례 변환 장치(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ducer-LVDT) 또는 각 변위 비례 변환 장치(Rotary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RVDT) 7) 도통 점검용 전기선 묶음(Wire Bundle) 8) 전기·전자장비실(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Compartment) 모형 9) 정전기방지용 장비 세트

별표 2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장비 또는 동물”을 “장비”로, 같은 표 제7호가목1)의 “조류, 우박”을 “우박”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 한 경우. 다만, 조종사 등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였거나, 충돌흔적이 발견된 경우에 한한다.

별표 3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5 제2호가목46)을 삭제하고, 같은 목 47) 및 48)을 각각 46) 및 47)로 하며, 같은 목 49)를 삭제하고, 같은 목 51)을 49)로 하며, 같은 목 50)을 48)로 하고, 같은 목 52)부터 54)까지를 각각 50)부터 52)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53)부터 6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20)을 삭제하며, 같은 목 21) 및 22)를 각각 20) 및 21)로 하고, 같은 목 23)을 삭제하며, 같은 목 25)를 23)으로 하고, 같은 목 24)를 22)로 하며, 같은 목 26)부터 42)까지를 각각 24)부터 40)까지로 한다.

5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4) 관제비행으로 운항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5) 관제비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6) 항공기와 관제탑이 있는 공항 간의 양방향 통신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항의 상공을 운항하거나 통과·출발·착륙한 경우(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7)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장비의 고장 또는 오작동, 결함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8)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정음료 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한 사람을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59)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경우 구비하여야 할 계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경우

60)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의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고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행한 경우

6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성능과 운항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게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3)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신고하기 전에 항공업무에 적용한 경우

64)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휴식시간 또는 연속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정비업무를 하게 한 경우

별표 35 제2호나목43)을 삭제하고, 같은 목 46)을 43)으로 하며, 같은 목 44) 및 45)를 각각 41) 및 42)로 하고, 같은 목 47)부터 72)까지를 각각 44)부터 69)까지로 하며, 같은 목 73)을 삭제하고, 같은 목 78)을 73)으로

하며, 같은 목 74) 및 75)를 각각 70) 및 71)로 하고, 같은 목 79) 및 80)을 각각 74) 및 75)로 하며, 같은 목에 78) 및 7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7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77)을 72)로 한다.

76)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78) 관제비행으로 운항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79) 관제비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5 제2호나목81) 및 8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85) 및 86)을 각각 81) 및 82)로 하며, 같은 목 8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84)를 80)으로 하며, 같은 목 80)(중전의 84)) 중 “경우”를 “경우(비행경로·고도·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87)를 삭제하며, 같은 목 88)부터 90)까지를 각각 84)부터 86)까지로 하고, 같은 목 91)부터 97)까지를 각각 87)부터 93)까지로 하며, 같은 목 98)를 삭제하고, 같은 목 99), 103) 및 104)를 각각 94), 98) 및 99)로 하며, 같은 목 100)부터 102)까지를 각각 95)부터 97)까지로 하고, 같은 목 105)를 삭제하며, 같은 목 106)부터 111)까지를 각각

100)부터 105)까지로 한다.

83)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행계획서에 기장 및 운항관리사가 서명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교체공항 등으로 회항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5 제2호나목112)를 삭제하고, 같은 목 113) 및 114)를 각각 106) 및 107)로 하며, 같은 목 115)부터 121)까지를 각각 108)부터 114)까지로 하고, 같은 목 122)를 삭제하며, 같은 목 123)을 115)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 20) 및 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16)을 삭제하고, 같은 목 17)부터 25)까지를 각각 16)부터 24)까지로 하며, 같은 목 26)을 삭제하고, 같은 목 28)을 26)으로 한다.

20)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정비능력 외의 정비를 하게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21)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특수공항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항승무원을 해당 공항에 운항하도록 하거나 운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항에 운항하게 한 경우

별표 35 제3호나목27)을 25)로 하고, 같은 목 29) 및 30)을 각각 27) 및 28)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17)을 삭제하고, 같은 목 18)부터 39)까지를 각각 17)부터 38)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44)부터 4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수령검사 및 자재의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자재 또는 부품을 항공기에 사용한 경우

45) 항공기의 일시적 비행허용을 위한 기술검토 절차를 위반하여
항공기 비행을 하게 한 경우

46) 항공기 컴퓨터 장치에 탑재가능 소프트웨어(Loadable software)가
제작사 등에서 마련한 보안강화 장치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경우

47) 자재의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48) 항공기 부품의 호환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49) 운항승무원이 비행 중 항공기 고도인지의 유지, 고도복명절차
를 위반한 경우

별표 3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0 비고 중 “교통안전공단”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중 “오손”을 “훼손”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영어능력등급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추가발급 선택사항	[] 전자적인 형태 ※ PVC 카드로 기본 발급되며, 전자파일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
--------------	---

별지 제38호서식 중 뒤 쪽의 “PVC카드”를 “PVC 카드 또는 전자적인 형
태”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104조제4
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중 “시행규칙 제104조의2제3항”을 “시행규칙 제10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뒤 쪽의 “처리기관(협조부서)”를 “처리기관(담당부서)”로 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운항 담당부서(항공기술 담당부서)”를 “국토교통부(항공운항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중 제2쪽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또는 항공기술과장”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또는 항공기술과장”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으로 하고,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또는 항공기술과장”을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장 또는 항공검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중 처리절차의 검토·확인 및 검사 실시 단계의 처리부서에 “국토교통부(항공운항 담당부서 및 항공기술 담당부서)”를 각각 “국토교통부(항공운항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0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9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신규로 시작하거나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규정 인가를 받거나 정비규정을 변경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체계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6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을 인가받은 자는 해당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자격증명등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호	자격증명 취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 벌금 200만원 이상 2)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벌금 100만원 미만	법 제43조제1항 제2호	자격증명 취소 효력정지 50일 효력정지 30일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 피해를 발생한 경우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호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3)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호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마. 법 제32조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년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	법 제43조제1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 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제5호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사.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 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 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아. 법 제40조제1항(법 제46조제4항 및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 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 업무(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 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 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자.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 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차.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 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카.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 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법 제43조제1항 제1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한 경우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파.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 행·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2 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 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하.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 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13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02퍼센 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콜농도 0.06퍼센 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콜농도 0.09퍼센 트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가.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14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02퍼센 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콜농도 0.06퍼센 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콜농도 0.09퍼센 트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너.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1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더.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 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위 반처분의 2분의1로 줄여 처 분한다.
러.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법 제43조제1항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장이 다 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 료 확인의 의무 2) 여객구조 등의 의무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 기고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 애 등의 보고의무	제1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며.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 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 고 운항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버.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 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 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 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서.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 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 나 착륙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어.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저.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커.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3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꺼.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터.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퍼.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6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정지 150일
허.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7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고.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	법 제43조제1항 제28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노. 법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도. 법 제93조제5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로.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0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모.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1호	자격증명 취소

2. 항공신체검사증명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 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1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	법 제43조제2항 제3호	효력정지 30일 이상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라. 제42조를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마.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2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	법 제43조제2항	가. 주류의 경우

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2호	1)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사.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아.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비고

1. 일반 기준

가. 자격증명등의 취소란,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항공기조종연습허가,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력의 정지란, 일정기간 항공업무(조종연습, 항공교통관제연습 및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에 정하고 있는 모든 자격증명 종류의 항공업무를 말한다.

다. 단일행위로 인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1회 위반행위로 처분하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고의·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별로 합산하여 처분한다.

마.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바.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라목 및 사목의 같은 위반행위란 위 표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위 표의 처목, 터목, 노목, 도목의 위반행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2. 가중 및 감경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안전을 위해 부득이 하게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 경우
- 3)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단, 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 4)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가 과거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단, 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 5) 타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6)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로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
- 7) 「공항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항시설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공항 등 이착륙 공항의 특성과 연계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 8) 그 밖에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타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4)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 5) 그 밖에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4]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 종류별 처분 내용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1호 및 제95조제1항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 하여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2호 및 제95조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3.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 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 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 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호 및 제95조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4.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 에 관한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정비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호 및 제95조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 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 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 공기기술표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 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5호 및 제95조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6.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표준 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법 제91조제1 항제6호 및 제95조제1항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2항			
7.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8.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8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9.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9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10.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0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11.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1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12.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	법 제91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1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제2항			
13.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3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14.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4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15.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5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16.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6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17.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7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18.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8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19.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9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20.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0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21. 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를	법 제91조제1항제21호 및			

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항공기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나. 항공기준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22.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2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23. 법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3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24.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	법 제91조제1항제24호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지 않은 경우		5일	5일	
25.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5호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26.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6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27.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7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28.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8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29.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2) 위험물취급기준의	법 제91조제1항제29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4)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5) 폭발성 물질을 격리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6)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7)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8)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9)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경미한 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운항정지 3일	운항정지 3일	운항정지 3일
30. 법 제72조제1항을 위 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 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0호 및 제95조 제1 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1. 법 제74조제1항을 위 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1호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32. 법 제75조제1항을 위 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 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2호 및 제95조 제1 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33. 법 제76조제1항을 위 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 무원에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3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4. 법 제76조제3항을 위 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4호 및 제95조 제1 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5. 법 제77조제2항을 위 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 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 거나 업무를 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법 제91조제1 항제35호 및 제95조 제1 항 · 제2항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해당하는 경우 1)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비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비행을 운항한 경우 나. 가목 외에 비행규칙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기록물의 보관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운항정지 30일	운항정지 30일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36. 법 제90조제1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6호 및 제95조제1항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37.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항공로·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장비품 등의 사용한	법 제91조제1항제37호 및 제95조제1항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계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4)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 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 한 경우 나. 가목 외에 항공기 중 량배분을 위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지상 제빙(除氷)·방 빙(防氷) 또는 신뢰성 관리프로그램 등 경 미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38. 법 제90조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8호 및 제95조제1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9. 법 제90조제7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9호 및 제95조제1항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40. 법 제93조제1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	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한 경우	제 95조 제1항 · 제2항	30일	30일	30일
41. 법 제93조 제2항 단서 (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0호 및 제 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42. 법 제93조제2항 본문 (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1호 및 제 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43. 법 제93조제5항 전단 (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2호 및 제 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44. 법 제93조제5항 후단 (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	법 제91조제1항 제43호 및 제 95조 제1항 · 제2항			

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능기반항행요구구역(PBN)의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3)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 정밀계기접근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밀접근계기비행한 경우 5)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나. 가목 외에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보고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3일
45. 법 제94조 각 호(법	법 제91조제1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 제44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운항정지 10일	운항정지 10일	운항정지 10일
46.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5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47.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6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48.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7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4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48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이상 120일 미만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이상 9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이상 60일 미만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80일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이상 12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이상 9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이상 90일 미만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이상 6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이상 60일 미만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거.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이상 30일 미만
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자의 재산피해가 10 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인 경우 러. 경미한 항공기사고 (가목부터 더목까지 에 해당하지 않는 항 공기사고를 말한다. 이하 더목 및 버목에 서 같다)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5회 이 상인 경우 며. 경미한 항공기사고 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4회인 경우 버. 경미한 항공기사고 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3회인 경우		15일 이상 20일 미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15일 이상 20일 미만	15일 이상 20일 미만
50.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 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 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9호 및 제95조제1항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 취소

비고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일행위로 인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3분의 2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1회 위반행위로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별로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나목의 같은 위반행위란 위 표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제29호나목·다목, 제35호나목·다목, 제37호나목·다목 및 제44호나목·다목의 위반행위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라. 제1호,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50호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정지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마. 위 표의 제4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가중 및 감경기준: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가중 및 감경기준을 따른다.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

내용	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변경 인가 대상
1. 일반사항			
가. 제정/개정/관리(차레/유효 페이지 목록/ 개정 기록 표/개정요약/인가 및 신고목록/ 배포처 등 포함)	O	O	
나. 목적(지속 감항정비 프로그램 (CAMP) 준수 명시)	O		
다. 적용 범위	O	O	
라. 책임관리자 의무	O	O	
마. 용어 정의 및 약어	O	O	
바. 관련 항공법규와 인가받은 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	O	O	
사. 정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목록 및 운항 형태	O	O	
2. 직무 및 정비조직			
가. 정비조직 및 부문별 책임관리자	O	O	
나. 정비업무에 관한 분장 및 책임	O	O	
다.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범위	O	O	O
라. 검사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범위	O	O	O
마.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의 자격인정 기준과 업무범위	O	O	O
바. 취항 공항지점의 목록과 수행하는 정비에 관한 사항	O		
사.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O	O	
3.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프로그램(CAMP)			
가.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및 적용 기준	O		O
나. 항공기, 엔진/APU, 장비품 등의 정비 방식, 정비 단계, 점검주기 등에 대한 프로그램	O		O
다.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정비계획	O		
라. 특별 정비작업 및 비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	O		
마.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O		O
바.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O		O
사.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기준	O		O
1) 경년항공기 안전강화 규정			
2) 경년시스템 감항성 향상프로그램			
3) 기체구조 반복 점검 프로그램			
4) 연료탱크 안전강화 규정			

5) 기체구조 수리평가 프로그램			
6) 부식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			
4.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가.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정 및 적용 기준		O	O
나. 운용 항공기의 검사방식, 검사단계 및 시기(반복 주기를 포함한다)		O	O
다. 항공기 형식별 검사단계별 점검표		O	
라. 시한성 품목의 목록 및 한계에 관한 사항		O	O
마. 점검주기의 일시조정 기준		O	O
5.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기준 및 방침	O	O	O
나. 지속적인 분석 및 감시 시스템 (CASS)과 품질심사에 관한 절차	O		O
다. 신뢰성관리절차	O		O
라. 필수 검사제도	O		O
마. 필수 검사항목 지정	O		O
바. 일반 검사제도	O	O	O
사. 항공기 고장, 결함 및 부식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항공 당국/제작사 보고 절차	O	O	O
아. 정비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효과분석 방법	O		
자. 수령검사 및 자재품질기준	O	O	O
차. 정비작업의 면제처리 및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	O		O
카. 중량 및 평형계측 절차	O	O	
타. 사고조사장비(FDR/CVR) 운용 절차	O	O	
6. 기술관리			
가. 감항성 개선지시, 기술회보 등의 검토 수행절차	O		O
나. 기체구조수리평가 프로그램	O		O
다. 항공기 부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O	O	O
라. 대수리·개조의 수행절차, 기록 및 보고 절차	O	O	
마. 기술적 판단 기준 및 조치 절차	O		O
바. 기체구조 손상허용 기술 승인 절차	O		O
사. 일시적 비행허용을 위한 기술검토 절차(Deferral EA)	O		O
아. 탑재 소프트웨어(Loadable software) 보안관리	O		O
7.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가. 수행하려는 정비의 범위(항공기 기종 및 엔진 형식별)	O	O	O
나.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비행 전 감항성 확인, 비상장비 작동가능상태 확인 및 정비수행을 확인하는 자 등)	O	O	

다.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 목록(CDL) 적용 기준 및 정비이월 절차(NEF 포함)	O	O	O
라. 제·방빙절차	O	O	
마. 지상조업 감독, 급유/급유량/연료 품질 관리 등 운항 정비를 위한 절차	O	O	
바.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수직 분리 축소(RVSM), 정밀접근 (CAT) 등 특정 사항에 따른 정비 절차	O	O	
사. 발동기 시운전 절차	O	O	
아. 항공기 여압 시험 절차	O	O	
자. 비행시험, 공수비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O	O	
차. 구급용구 등의 관리 절차	O	O	
카. 정전기 민감부품(ESDS)의 취급 절차	O	O	
8. 계약정비			
가. 계약정비를 하는 경우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 서명 및 확인절차	O	O	
나. 계약정비에 대한 평가, 계약 후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	O		O
9. 장비 및 공구 관리			
가. 정밀측정 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절차	O		O
나. 장비 및 공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승인 절차	O	O	
10. 정비 시설			
가.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정비시설의 위치 및 수행하는 정비작업	O	O	
나. 각 정비 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 및 환경 기준	O	O	
11. 정비 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 기록물 의 관리방법			
가. 각종 기술자료의 접수, 배포 및 이용 방법	O	O	
나. 전자교범 및 전자 기록 유지관리 시스템	O		O
다. 탑재용 항공일지(비행 및 정비) 등의 서식 및 기록 방법, 운영 절차	O	O	O
라. 정비기록 문서의 관리책임 및 보존 기간	O	O	O
마. 정비문서 및 각종 꼬리표의 서식 및 기록 방법(기술 지시서, 정시점검 카드, 작업지시서 등)	O	O	
12. 정비 훈련 프로그램			
가.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시간 및 실시 방법	O	O	O
나. 강사(교관)의 자격 기준 및 임명	O	O	O
다. 훈련자의 평가 기준 및 방법	O	O	O
라. 위탁교육 시 위탁 기관의 강사, 커리큘럼(curriculum) 등의 적절성 확인 방법	O	O	
마. 정비훈련 기록에 관한 사항	O	O	

13. 자재 관리			
가. 자재관리 일반(구매, 검수, 저장, 불출, 반납 등)	O	O	O
나.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	O	O	
다. 부품 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	O		
라. 외부 보관부품(External Stock) 관리에 관한 사항	O		
마. 비인가 부품·비인가의심부품의 판단 방법 및 보고 절차	O	O	
바. 위험물(Dangerous Goods) 취급 절차	O	O	
사. 호환품 선정기준	O	O	
14.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지상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O	O	
나. 인적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O	O	
다. 마약, 약물 및 주류 오용 금지사항	O	O	
라. 항공기 보안에 관한 사항	O	O	
15.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양식 및 양식 관리절차	O	O	

대 한 민 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o.
제 작 증 명 서 Production Certificate	
1. 분류 (Classification)	
2.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3.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4. 제작공장 위치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5. 품질관리규정 명칭 (Title of Quality Control Manual)	
6. 관련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번호 (Related (Restricted)Type Certificate No. and/or Supplemental Certificate No.)	
「항공안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제작자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rticle 22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manufacturer is in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직인	
본 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기본설비 또는 위치의 주요변경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any major change in the basic facilities, or in the location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사면허증	발행기관명 및 번호			발행일자	
소속병원/의원	병원/의원명			소유자명	
	주소				
항공의학 교육	기간	교육기관명	소재지	수료여부	
임상/항공 의학경력	기간	병의원명	소재지	경력	
그 밖의 필요사항					

「항공안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2. 항공의학 분야의 경력증명 서류	
	3. 별표 13의 항공신체검사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소속 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문의 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앞 쪽)

[illegible]

(뒤 쪽)

2. 항공기 운항에 대한 영향 및 항공기 손상 등에 관한 사항**가. 기초 자료**

항공기 운용자	
항공기 제작사/모델	
엔진 제작사/모델	
항공기 등록번호	
발생 일자	
비행장/알고 있는 위치	

나. 피해 비용 정보

항공기 운항 중단 시간	
수리 및 대체 관련 추정 비용 U.S \$(단위 : 천\$)	
기타 추정 비용 (예 : 이익·연료·숙박 손실) U.S \$(단위 : 천\$)	

다. 엔진 손상 충돌에 관한 특별 정보

엔진 위치 번호		1	2	3	4
고장/정지의 원인	포함되지 않은 고장	[]	[]	[]	[]
	화 재	[]	[]	[]	[]
	정지 - 진동	[]	[]	[]	[]
	정지 - 고열	[]	[]	[]	[]
	정지 - 화재 경고	[]	[]	[]	[]
	정지 - 기타(자세히)	[]	[]	[]	[]
	정지 - 원인 미상	[]	[]	[]	[]
추정 추력 손실률*					
흡입된 조류(동물)의 추정 개체 수					
조류(동물)의 종류					

* 추력 손실률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치를 작성할 것

보고자 :

운항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회사명 및 주소		
	운항주기지의 주소		
운항 개시 예정일			
회사식별 부호(예정)	3개 문자로 된 회사식별 부호(우선순위 순으로 적음)		
회사대표	성명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직위		
사업종류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정보	기종	제작년월일	
	승객좌석수 또는 화물적재용량		
운항지역			
예정된 운항 또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정보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비조직인증서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E

- 인증서 번호 :
Certificate Number
- 사업자 명칭 :
Title of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사업자 주소 :
Address
- 본 증명서는 상기 정비조직인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인가된 정비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Upon finding that its organization complies in all respects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7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7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nd is empowered to operate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with the Class and Rating Authorized
- 정비시설의 위치 : 정비조직절차교범 _____에 등재
Locations of maintenance facilities : As per _____ of the latest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s Procedures Manual.
- 승인된 업무 범위 / Class and Rating Authorized

종류 CLASS	한정 RATING	제한사항 LIMITATION
항공기 Aircraft		
엔진 Engine		
부품 Component		
특수정비 Specialized maintenance		
<주기/note>		

이 승인된 업무 범위는 인가된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작업범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된다.

This Class and Rating Authorized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approved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s Procedures Manual.

7. 만료일 :

Expiration date :

이 정비조직원증서는 일시 자격정지 또는 무효화, 대체, 반납하지 않는 위에 명시한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This certificate shall remain valid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specified above unless it is surrendered, superseded, suspended or revoked

8. 발행일 :

(최초발행일 :)

Date of current issue :

(Date of original issue :)

9. 서명 : _____ (발급 부서장)

Signature

지방항공청장

직인

Administrator of ○○ Regional Office of Aviation

210mm×297mm[백상지 (120g/㎡)]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30 Days)
Applicant	Name of State		
	Name of Company		
	Name of Person in Charge		
	Address (Telephone: , FAX: , E-mail:)		
Company registered name as stated in the approval document			
Trading name(s) if different than the Registered name stated on the Authorization, under which the operator may operate			
The types of operations authorized:			
☐ Passenger and Cargo		☐ Scheduled Operations	
☐ Passenger Only		☐ Charter Flight Operations	
☐ Cargo Only		☐ Dangerous Goods	
Destination airport(s) in [State] to be served			
Aircraft types authorized for use			
Frequency of flights			
Planned date to operate			
Details of variation			
Reasons for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4, Article 279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Year) (Month)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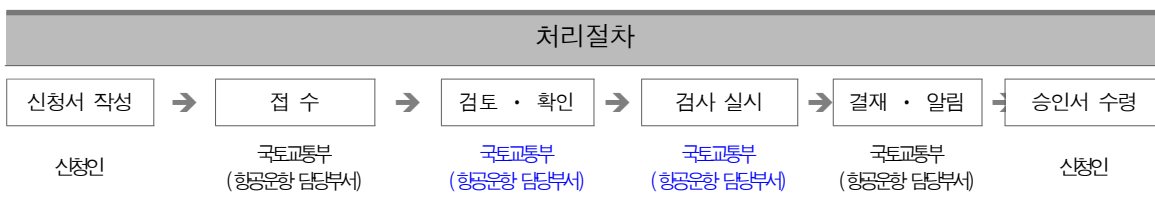
Applicant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 s)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vidential Document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 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④ ~ ⑦ (생략)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
체검사증명서 발급한 결과를 다
음 달 5일까지 영 제26조제7항
제1호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
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
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
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

-----, 이 경우 항공
전문의사는 영 제26조제7항제1
호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
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단축
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국
국항공우주의학협회-----

-----.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
4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항공업무
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

을 할 수 있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생략)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사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거나 별표 9의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
---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반납하도록 ---. 이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은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상태의 저하

<신 설>

<신 설>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의 소견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술

2. 정기적 의약품 복용

3. 일상적 검사에서의 이상소견으로 인한 정밀검사

4. 비정상 심장리듬

5.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 상태 경험

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체상태 저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업무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회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u>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간 동안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u>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u>자격증명서</u>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 14. (생략)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자격증명서(국내의 경우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u> ----- ----- 9. ~ 14. (현행과 같음)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② (생략)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 측정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u>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 (생략)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
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76
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증명 취소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하

② -----

----- . 다만, 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
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

----- .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를 전자적
인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증명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4에서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의 취소인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항공기 운항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다만, 별표 34 제48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 3

분의 2-----
-----.

-----.

③ -----

-----.

1. -----

2. -----

----- 제49호가목부터

-----.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국제항공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한 운항증명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및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1. 「항공사업법」 제54조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생략)

3.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적합 여부와 -----

-----.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 제2호 -----

발급할 수 있다. ④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u>이내에 그 변경의 내용 및 사유를</u>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법 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u>검사</u>는 제2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④ ----- ----- ----- ----- ----- ----- --- <u>이내에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u>-----. 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 ----- ----- ----- <u>검사</u>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7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u>적합 여부와</u> ----- --.
--	---